

산업재산권과 상표

산업재산권 (産業財産權)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1883년 3월 20일의 파리동맹조약, 언필칭 <산업재산권보호동맹조약> 제1조에서부터 유래한다. 여기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발명특허·실용신안, 공업적 의장(意匠) 또는 모형, 제조표 또는 상표·상호 및 원산지의 표시, 또는 출처의 칭호 및 부정경쟁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리하여 <산업재산권은 넓은 의미에서 산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산업 및 채취산업의 범위 및 포도주·곡물·담배 잎·과일·축류·광물·광천·맥주·화초·곡분 등 일체의 제조품 또는 천연산물에까지 미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보호하는 법제는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특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어, 널리 산업상의 이익을 타인의 부정경쟁에서 보호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재산권 또는 산업적 소유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은 상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상법의 중요한 보조적 법제로 작용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경제 교통의 세계적 확대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법적 보호가 각국마다 다르면 다를수록 그만큼 불편하므로 전술의 조약은 동맹을 조직해서 중요한 점에서 통일적인 보호와 단속의 실현을 기하고자 함이었다.

한국의 현행법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분류된다. 이 조약은 1958년 10월 포르투갈(Portugal)의 수도 리스본(Lisbon)회의에서 개정되었다.

목 차

1. 산업재산권
2. 산업재산권 보호동맹조약
3. 무체물
4. 무체재산권
5. 상 표
6. 상표권
7. 상표법

글 · 윤영함 대표이사 동양전자(주)

우선 특허권자가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부여되는 실시권의 내용을 특허권자에게 다소 유리한 편으로 바꾸어서 고쳤다.

그리고 자기의 서비스를 타인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표장(標章)을 새로운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하게 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에 부실표시 행위(不實表示行爲)를 추가했다. 상표에서는 주지표장(周知標章)의 보호를 강화하고, 종래에는 그것과 혼동하기 쉬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고 또 무효로 했을 뿐이나 이번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게 했다.

다음에 상표권자의 승락을 얻지 않고 그 대리인이 부당히 그 상표를 자기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등록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의 취소 또는 권리의 자기 앞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게 하였다.

산업재산권보호동맹조약(産業財産權同盟條約)

이것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이며,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1883년 3월 20일의 파리동맹조약>을 통칭한 것이다. 가맹국은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동맹을 성립시키고 내외인(內外人) 평등의 원칙에 의해 산업재산권의 통일적 보호를 목표로 정립시킨 것이다.

여기서 표명된 목적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발명특허·실용신안·공업적 의장(意匠) 또는 모형, 제조표 또는 상표·상호 및 원산지의 표시 또는 출소의 호칭과 부정경쟁의 방지를 내세우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의의는 넓게 해석되며 본래의 산업이나 상업뿐만 아니라 포도주·곡물·연초 등 농산

업이나 채취 산업의 범위에까지 두루 미친다.

그후 1900년에 브뤼셀에서, 1911년 워싱턴, 1925년 헤이그, 1934년 런던에서 개정되었다. 널리 확산되어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유고슬라비아 등의 동(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가맹하였으나 러시아는 가맹하지 않았다. 현재 국제사무국은 스위스 서부의 도시로서 이 나라의 수도인 베른(Bern)에 있다.

무체물(無體物)

유체물(有體物) 이외의 물건이다. 글자 그대로 형체가 없이 다만 상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법률에서는 음향(音響)·향기(香氣)·전기·빛·열(熱) 등과 같이 유형적(有形的) 존재를 갖지 않는 것이다. 민법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하여 열·빛·원자력·풍력따위의 에너지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체물도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사람의 지능적 창작물과 같은 무형(無形)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무형(無形)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곧 인간의 정신적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무체 물권(物權)·지능권(知能權)·정신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전매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등은 여기에 속한다. 이것을 권리와 같이 무체물 상에 속하는 물권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는 갖가지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상표(商標 : trade mark)

자기의 영업에 관계되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標識)로서 특히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다. 마크가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B.C. 2세기경으로 소급되며, 벽돌·기와·단지 등에 공인(工人)이 표지를 붙인 것이 그 시초이며 고대 로마시대의 도기(陶器)나 단지 등의 밑에 마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의 활판 인쇄술 발명자 구텐베르크(J.G.Gutenberg:1400~1468)에 의한 인쇄기의 발명에 의하여, 점차로 인쇄본(本)의 평가가 높아져 판원(版元)에 마크를 붙여서 판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1457년 경에는 가짜 마크를 사용한 가짜 책이 나타나 큰 문제가 되어, 따라서 마크의 보증을 주장하게 되었다.

1875년 프랑스와 영국에서 처음으로 <상표등록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 신용표시를 위한 단순한 형태에서 점차 디자이너(designer)의 의장(意匠)에 의한 현대적 상표로 발전하게 되었다. 상표법상, 등록 불가능한 것과 또 등록된 것도 갱신할 수 없는 것으로는 국기·국장(國章)·군기·기장(紀章) 등이 있다.

그리고 또 올림픽 마크와 문자 또는 기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정부에서 개설하거나 정부의 허가를 얻어 개설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의 관설(官設)이나 관허 박람회의 상패(賞牌), 상장 또는 포장(褒章)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형을 표시한 것, 질서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 같

은 종류의 상품에 널리 관용(慣用)하는 표장(標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상품에 성질만을 설명하거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그림만을 표시한 지리적인 명칭·도면·약기(略記)만으로 된 것,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종의 상품에 쓰이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상표등록은 등록된 날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다시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표권은 상표권리인이 그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소멸되게 되어 있다.

상표권(商標權)

상표는 상공업자(商工業者)가 자기의 생산·제조·가공·선택·증명·취급 및 판매영업에 관계되는 상품임을 알리려고 상품에 붙이는 표지이다. 이러한 영업을 표창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독점적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다.

산업재산권·무체(無體)재산권의 일종이다. 상표권자는 이 권리 침해에 대해서 침해의 저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예방을 사전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권은 영업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상표법(商標法)

상표와 관련하여 기업경영상의 신용확보와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상표의 정당한 사용과 상표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